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. 12. 31.로 도래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13조의2)
 - “2023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연장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(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, 제8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)

5. 검토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) 제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동 조항에 따라 '18. 11. 19. 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」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'23. 12. 31.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)의 존속기한으로 정한 바 있음.
- 우리 도는 '22년부터 5년간 도 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재원은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있고, 충북도의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를 보면 도 내 지역간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임.

참 고

< 충청북도 내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 >

시군	청주	진천	음성	충주	증평	제천	옥천	보은	영동	단양	괴산
발전도	1.66	1.60	1.02	0.18	-0.04	-0.32	-0.49	-0.85	-0.87	-0.89	-1.00

* 출처 : 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」 4단계(2022~2026) 추진방침(2021. 2.)

- 한편 법 제9조제4항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- ‘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(‘23. 8. 9.~11.)에서 ‘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2028. 12. 31.까지)’ 안전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, 원안의 결되어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였음.

-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3. 8. 29.~'23. 9. 1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. 12. 31.에서 2028. 12. 31.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,
- 도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특별회계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점, 특별회계 연장을 위한 상위법의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.